친생부인

[수원지방법원 2013. 9. 5. 2013르916]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드단18813 판결

【변론종결】2013. 7. 4.

【주문】

1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 3.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 4.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2와 1943.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원고 2는 1945. 7. 23. 출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1953. 11. 12.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신고는 망인이 1955. 4. 25.에 하였으며, 그 출생신고의 기재에 따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망인이, "모"로 소외 2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1955. 6. 5. 소외 2와 협의이혼 신고를, 1956. 6. 7. 원고 1과 혼인신고를 각 마쳤다.

- 라. 망인은 2006. 10. 19. 사망하였다.
- 마.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던 도중 원고 1은 2010. 10. 29.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기하였다.

- 바. 이전 소송 과정에서 2011. 4. 25. '원고 2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과 원고 1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3은 그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이나, 피고는 원고 2 및 소외 3과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 2와 피고는 그 어머니가 동일한 사람이나, 원고 2 및 피고와 소외 3은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왔다(즉 원고 2와 소외 3의 부(父)는 망인이고, 피고의 부(父)는 망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이다).
- 사. 이전 소송에서 제1, 2심에서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2. 10. 11. 대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판결(대법원 2012의 1892)이 선고되었다.
- 아.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 10. 22.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2와 1943.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원고 2는 1945. 7. 23. 출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1953. 11. 12.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신고는 망인이 1955. 4. 25.에 하였으며, 그 출생신고의 기재에 따라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망인이, "모"로 소외 2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1955. 6. 5. 소외 2와 협의이혼 신고를, 1956. 6. 7. 원고 1과 혼인신고를 각 마쳤다.

- 라. 망인은 2006. 10. 19. 사망하였다.
- 마.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던 도중 원고 1은 2010. 10. 29.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바. 이전 소송 과정에서 2011. 4. 25. '원고 2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과 원고 1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3은 그 아버지가 동일한 사람이나, 피고는 원고 2 및 소외 3과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 2와 피고는 그 어머니가 동일한 사람이나, 원고 2 및 피고와 소외 3은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왔다(즉 원고 2와 소외 3의 부(父)는 망인이고, 피고의 부(父)는 망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이다).
- 사. 이전 소송에서 제1, 2심에서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2. 10. 11. 대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관

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판결(대법원 2012므1892)이 선고되었다.

아.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 10. 22.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